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3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이종배·박덕흠·성일종

이성권 · 김성원 · 강승규

김예지 · 김용태 · 엄태영
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기후 변화 및 열대·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,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.

따라서 가축전염병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재 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·대비· 대응·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.

또한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

따른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,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하고,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나목 중 "확산"을 "확산,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른 병해충의 확산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	나
폭발 • 교통사고(항공사고	
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	
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	
고・다중운집인파사고 등	
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	
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	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	
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	
가축전염병의 <u>확산</u> , 「미	<u>확산, 「식물방역법」</u>
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	에 따른 병해충의 확산
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	
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	

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	
의 추락・충돌 등으로 인	
한 피해	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